

선  
람

기관의장

제1679호 2022. 6. 27.(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5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6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0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_\_\_\_\_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_\_\_\_\_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8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고시 \_\_\_\_\_ 9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0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_\_\_\_\_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56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_\_\_\_\_ 2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58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_\_\_\_\_ 3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67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_\_\_\_\_ 42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5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_\_\_\_\_ 4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59호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원”  
을 “1,6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60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5명”을 각각 “6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9조제1항 중 “본회”를 “본회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85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0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9-244호(2019.12.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중로1-503호선, 사업명: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503호선) 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6.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변경사유

- 지장물(전주, 통신주 등) 이설 관련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 2.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1번지 일원

###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03호선)
- 명칭: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503호선) 개설공사

##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m <sup>2</sup> )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1	503	20 (20~24)	20 (20~24)	673	-	59	614	1,926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 인가일 ~ 2022. 06. 30.
-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2. 12. 31.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따로 붙임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503호선) 개설공사

구분					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변경없음	백석동	11-5	전	1,051	1,0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변경없음	백석동	11-6	전	531	5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변경없음	백석동	10-1	전	106	1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변경없음	백석동	12-13	전	127	12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변경없음	백석동	13-1	도로	1	1	인천광역시				
6	변경없음	백석동	226-17	도로	110	110	국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87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2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과량로116번길 5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6.2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6-2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3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116번길 5 (원창동)	20171023	파랑로 시작지점부터 약 1,160m 지점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332 (원당동, 대방디에트르 리버파크아파트)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첫번째 도로	대방디에트르 리버파크아파트 (검단신도시 AB10)
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7-48, 957-37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40-1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7-34, 957-45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40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7-44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35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4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배후로 45 (원창동)	20190121	북항 북배후단지에 조성된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7-33, 957-40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37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7-32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39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8-16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58번길 21 (가좌동)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1-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2번길 3-13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7-2, 957-50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40-2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7-1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34번길 33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20 (원당동)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다섯번째 도로	연세프라자8 (검단신도시 C10-2-2)
1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52-3	인천광역시 서구 금산로 28 (경서동)	20200629	도로진행방향에 금산이 위치하고 있어 금산로라 명명함	
15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25	인천광역시 서구 꽃피길 166 (검암동)	20090922	꽃피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2-6-27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15번길 22-1 (심곡동)	건축허가로 인한 폐지	20081231	서곶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88호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에 보고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시기간 : 2022. 6. 27.(월) ~ 7.15.(금)
2. 고시내용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3. 목 적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증가등 협의회의 규모 확대에 따라 상설사무국 설치 및 임원도시 정비를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개정 규약을 구의회에 보고후 고시 절차 이행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5. 고시방법 : 서구 홈페이지 게재
6. 문 의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행복과 아동친화정책팀(032-560-6821)

붙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1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 규약

2015. 9. 14. 제정  
2016. 11.16. 개정  
2017. 11. 3. 개정  
2018. 9. 13. 개정  
2019. 9. 24. 개정  
2021. 7. 1. 개정  
2021. 11. 2. 개정  
2022. 4. 12.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12.)

**제2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 1.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2.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 3.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 4.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협의회는“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된다.  
(개정 2019. 9.24.)

**제4조[임원 및 조직]**

- ①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사무총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 2021. 11. 2.)
- ②회장, 감사, 사무총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개정 2021. 11. 2.)
-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3.)

- ④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사무국을 설치한다. (개정 2021. 7. 1.)

### 제5조[임원의 임기]

- ①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3.)
- ②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 ①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1.3.)
- ②협의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
- ③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개정 2016.11.16.)
- ⑤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제출]

- ①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등]

-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4.)
-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 9.24.)
-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3.)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신설 2019. 9.24.)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신설 2019. 9.24.)
8. 사무국 별도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신설 2021. 7. 1.)

###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 ①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협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
- ③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11.3.)
- ④협회의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신설 2019. 9.24.)
- ④의2 ④ 사무국 별도 설치 시, 부담금 예산을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 되, 지자체 세출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신설 2021. 7. 1.)

**제14조[규약개정]**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16조[가입 및 탈퇴]

- ①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 ②본 협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③본 협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제17조[사무국]** (신설 2021. 7. 1.)

-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급여는 내부 운영방안(방침)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국의 업무)** (신설 2021. 7. 1.)

- ① 총회, 실무진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
- ②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 회계
- ③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
- ④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사업 제안 및 추진
- ⑤ 기타 총회 및 실무진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자치단체 ( 2022. 4)

지 역	지자체명
서울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남구
부산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서구, 진구, 북구, 남구, 연제구
인천 (3)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광주 (5)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남구
대구 (1)	달서구
대전 (3)	유성구, 대덕구, 서구
울산 (1)	북구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7)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 (8)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경기 (16)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군포시, 의왕시, 광주시, 과천시, 하남시
강원 (4)	횡성군,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남 (6)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나주시, 고흥군
경북 (5)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칠곡군, 김천시
경남 (3)	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109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6.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 개정이유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2단계」 구간 준공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법정동(마전동, 당하동)이 혼재되어 있어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는 불합리한 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명칭과 구역) 조문에 따른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마전동, 당하동의 관할구역 개정.

####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3,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개정이유

-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2단계」 구간 준공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법정동(마전동, 당하동)이 혼재되어 있어 1개 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는 불합리한 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마전동, 당하동의 관할구역 일부 조정

###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별지 참조”

나.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

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서 구	백석동	- 백석동 일원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백석동 80, 80-11, 80-16, 80-52, 81-10, 산33-6~7, 산34-2, 산34-7~9, 산34-11~12
	시천동	시천동 일원
	검암동	- 검암동 일원 - 2003. 7.29 경서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 - 경서동 1, 1-1, 1-3~5, 1-21, 1-26~29, 1-31, 1-33, 1-47, 1-50, 1-55~64, 2-4~5, 2-7, 2-9~12, 3-46~47, 5-37~39, 6-1~3, 6-5~14, 6-18~21, 6-23~37, 7-2~5, 8-4~5, 382-3, 산1-1, 산18-8 - 2003. 7.29 공촌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 - 공촌동 47-5~6, 49, 49-6, 50, 50-1~3, 51-1~11, 5-13~14, 51-17~39, 51-41~42, 51-44~49, 51-51, 51-53~8, 51-60~67, 51~71, 51-75~87, 51-95~97, 51-99~101, 51-104, 51-110~114, 52-1~16, 53-1~9, 54-1~4, 54-6~9, 55-1~7, 55-10, 55-12~13, 56, 56-1, 56-3~5, 57, 57-1~12, 57-15~16, 58, 58-1, 293-2~3, 293-5~7, 294-1~3, 산 36-11~12 - 2003. 7.29 연희동에서 일부경정 편입지역 포함 - 연희동 73-1, 73-5, 555-15~17
	경서동	경서동 일원 - 청라동으로 종전의 경서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 청라국제도시 내 경서동 전부, 경서동 1016, 1016-1, 496-10, 513-2, 513-3, 513-4, 513-5, 513, 514-1, 514-2, 514-3, 514-4, 515-1, 515-2, 515-3, 515-4, 515-5, 515, 516-11, 516-12, 516-13, 516-17, 516-2, 516-3, 516-6, 516-7, 516-9, 517-11, 517-12, 517-13, 517-14, 517-26, 517-29, 517-30, 517-31, 517-32, 517-7, 517-9, 518, 518-17, 518-32, 518-43, 518-44, 518-65, 518-68, 518-70, 518-75, 518-76, 519-20, 519-21, 519-26, 519-32, 519-33, 519-37, 520-22, 520-30, 520-31, 520, 522-28, 522-51, 522-52, 522-53, 522-66, 522-68, 526-1, 526-4, 527-1, 527-4, 570, 575, 577-2, 594-1, 594, 595, 595-1, 595-2, 595-4, 673-11, 673-12, 673-15, 673-16, 673-17, 673-18, 673-19, 673-1, 673-20, 673-21, 673-22, 673-23, 673-24, 673-25, 673-26, 673-27, 673-28, 673-3, 673-45, 673-46, 673-47, 673-48, 673-49, 673-4, 673-50, 673-51, 673-52, 673-53, 673-54, 673-55, 673-56, 673-57, 673-5, 673-61, 673-62, 673-63, 673-64, 673-65, 673-66, 673-67, 673-68, 673-69, 673-6, 673-71, 673-72, 673-73, 673-74, 673-75, 673-76, 673-77, 674-11, 674-13, 674-14, 674-15, 674-16, 674-2, 674, 675, 676, 677-1, 677, 712, 713, 714, 715, 716-1, 716-2, 716, 717, 991, 991-1, 991-2, 992, 산251-10, 산257-10, 산257-11, 산257-2, 산257-3, 산257-4, 산257-5, 산257-6, 산257-7, 산257-8, 산257-9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공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촌동 일원</li> <li>- 2003. 7.29 검암동으로 일부경정 편입지역 제외</li> </ul> 공촌동 47-56, 49, 49-6, 50, 50-1~13, 51-1~11, 51-13~14, 51-17~39, 51-41~42, 51-44~49, 51-51, 51-53~58, 51-60~67, 51-71, 51-75~87, 51-95~97, 51-99~101, 51-104, 51-110~114, 52-1~16, 53-1~9, 54-1~4, 54-6~9, 55-1~7, 55-10, 55-12~13, 56, 56-1, 56-3~5, 57, 57-1~12, 57-15~16, 58, 58-1, 293-2~3, 29-5~7, 294-1~3, 산 36-11~12
	연희동	연희동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라동으로 종전의 연희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li> </ul> 청라국제도시 내 연희동, 연희동 432-19, 578-1, 578, 579-1, 618-2, 619-1, 620-1, 621-14, 621-2, 621-3, 621-6, 621-7, 621-8, 621-9, 810-11, 810-5, 828-1, 828-2, 828-3, 829-1, 829-2, 830-1, 830-2, 831, 832, 833, 834, 산139-14, 산139-18, 산139-23, 산139-24, 산139-25, 산148-12, 산148-20
	심곡동	심곡동 일원
	청라동	청라동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의 연희동, 경서동, 가정동, 원창동 일부 편입지역 포함</li> </ul> 청라국제도시 내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전부, 경서동 1016, 1016-1, 496-10, 513-2, 513-3, 513-4, 513-5, 513, 514-1, 514-2, 514-3, 514-4, 515-1, 515-2, 515-3, 515-4, 515-5, 515, 516-11, 516-12, 516-13, 516-17, 516-2, 516-3, 516-6, 516-7, 516-9, 517-11, 517-12, 517-13, 517-14, 517-26, 517-29, 517-30, 517-31, 517-32, 517-7, 517-9, 518, 518-17, 518-32, 518-43, 518-44, 518-65, 518-68, 518-70, 518-75, 518-76, 519-20, 519-21, 519-26, 519-32, 519-33, 519-37, 520-22, 520-30, 520-31, 520, 522-28, 522-51, 522-52, 522-53, 522-66, 522-68, 526-1, 526-4, 527-1, 527-4, 570, 575, 577-2, 594-1, 594, 595, 595-1, 595-2, 595-4, 673-11, 673-12, 673-15, 673-16, 673-17, 673-18, 673-19, 673-1, 673-20, 673-21, 673-22, 673-23, 673-24, 673-25, 673-26, 673-27, 673-28, 673-3, 673-45, 673-46, 673-47, 673-48, 673-49, 673-4, 673-50, 673-51, 673-52, 673-53, 673-54, 673-55, 673-56, 673-57, 673-5, 673-61, 673-62, 673-63, 673-64, 673-65, 673-66, 673-67, 673-68, 673-69, 673-6, 673-71, 673-72, 673-73, 673-74, 673-75, 673-76, 673-77, 674-11, 674-13, 674-14, 674-15, 674-16, 674-2, 674, 675, 676, 677-1, 677, 712, 713, 714, 715, 716-1, 716-2, 716, 717, 991, 991-1, 991-2, 992, 산251-10, 산257-10, 산257-11, 산257-2, 산257-3, 산257-4, 산257-5, 산257-6, 산257-7, 산257-8, 산257-9

	<p>연희동 432-19, 578-1, 578, 579-1, 618-2, 619-1, 620-1, 621-14, 621-2, 621-3, 621-6, 621-7, 621-8, 621-9, 810-11, 810-5, 828-1, 828-2, 828-3, 829-1, 829-2, 830-1, 830-2, 831, 832, 833, 834, 산139-14, 산139-18, 산139-23, 산139-24, 산139-25, 산148-12, 산148-20</p> <p>가정동 58-27,58-29,58-30, 58-31, 58-33, 58-35, 58-39, 58-40,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p>
가정동	<p>가정동 일원</p> <p>- 청라동으로 종전의 가정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p> <p>가정동 58-27,58-29,58-30, 58-31, 58-33, 58-35, 58-39, 58-40,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p>
신현동	<p>신현동 일원</p> <p>- 가정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p> <p>가정동 120-13, 120-22~26, 120-35, 120-46~47, 120-69~71, 120-74~76, 120-78, 120-84, 120-90, 120-92, 120-95, 120-98, 120-100, 120-102, 120-104, 120-107, 120-132, 120-134, 120-144, 120-146, 120-149~152, 120-155, 120-157~160, 120-163, 120-173, 120-176~180, 120-182~183, 120-185~190, 203-2, 204-5~6, 204-8~11, 204-14~15, 204-43, 204-64~67, 204-72~75, 204-87~88, 204-91, 204-104, 204-112, 204-114~115, 204-124~131, 204-138~139, 204-141~142, 204-145~148, 204-150, 204-152~154, 204-156~159, 204-161~162, 204-164~168, 204-173~188, 469-5~9, 469-12~13, 470, 572-1, 593-5, 120-91, 120-106, 120-194~197, 203-24~25, 204-69, 204-99, 204-189, 469-15~17</p> <p>- 원창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p> <p>원창동 1, 1-1~23, 2-19, 2-23~24, 2-32~34, 2-37, 2-39~41, 2-62~63, 2-65~67, 2-74~75, 67, 67-5, 68, 68-3, 197-1, 197-5~6, 산4-2, 산4-4, 산4-78, 산4-10, 산4-12, 산5-1~2, 산5-5~7, 2-77, 2-79, 65-4, 69-5, 197-7, 197-9, 산4-15, 산4-18, 산5-8, 산6-4, 산9-20, 산18</p>
석남동	석남동 일원
원창동	<p>원창동 일원</p> <p>- 청라동으로 종전의 원창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p> <p>청라국제도시 내 원창동</p>
가좌동	가좌동 일원

	<p>마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전동 일원</li> <li>- 왕길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마전동 625, 660-2, 660-44, 661-2~3, 662-5, 663-1~4, 695-2~7, 696-2~6, 696-8~10, 698-7, 698-22, 698-31, 699-14, 735-5, 740-3, 산160-1, 산156-2~3, 산157-4, 산158-5</li> <li>- 왕길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왕길동 219-18</li> <li>- 당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당하동 925-21~22, 925-24, 1012-1, 1015-3, 1018-1</li> <li>- 불로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불로동 725-8~9, 751-1</li> <li>-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마전동 498, 498-1, 499-2, 541-1~2, 545-14, 545-18~24, 546-7, 547, 547-1~11, 547-13~16, 548, 548-1, 549, 550-1~5, 553-1, 555-1~2, 556, 556-1~2, 557, 558, 559-8~10, 559-12~14, 559-18, 559-23, 559-26~27, 559-34, 559-42, 582-10~11, 582-18, 582-21~22, 582-24, 582-26, 582-30, 609, 609-1~9, 610, 615, 615-1, 616-2, 616-4~5, 617-3~4, 617-6~7, 710-1, 713-10, 715~717, 산170-18~19, 산171-1, 산171-3~4, 산171-7, 산172, 산172-1~3, 산181-2~4, 산181-10~13, 산181-16, 산182, 산183-1~2, 산184-1~2, 산185-1~3</li> <li>-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169필지)        마전동 518-7, 520-5, 521-1~5, 521-7,~9, 521-11, 521-13~14, 521-21~22, 521-26, 522-1~5, 523, 524, 524-1~3, 524-5, 524-7, 524-9, 524-11, 524-14~16, 524-18~20, 525-1~3, 526, 526-1~2, 526-4, 526-6~7, 527, 527-1, 529, 529-1~2, 529-4, 529-6~7, 529-9~10, 530, 530-1, 531, 531-1~2, 532, 532-1~6, 533, 533-1, 534, 534-1~8, 535-1, 535-3~6, 536-1, 536-3~5, 537, 537-1, 538-1, 539, 540, 540-1~7, 540-9~11, 541, 542, 543, 543-1, 544, 544-1~3, 545-1~4, 545-6~13, 545-15~17, 545-27~29, 546-1~2, 546-5~6, 710, 710-2~3, 711, 712, 산181-1, 산181-14, 산181-17, 산196-5, 산196-15, 산196-17, 산196-20, 산196-23, 산197-1, 산197-6~9, 산198, 산199-1, 산199-3, 산199-5~6, 산199-9, 산200, 산203-1, 산203-3~5, 산204-1~2, 산204-4, 499-3(일부), 515-32(일부), 710-4(일부), 산180-5(일부), 산185-9(일부), 산194-4(일부)</li> </ul>
--	------------	--

	당하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하동 일원</li> <li>- <b>원당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83개 필지)</b></li> <li>- 원당동 457-1, 461, 461-1, 461-2, 462, 462-1, 462-2, 462-3, 462-4, 462-5, 462-6, 462-7, 462-8, 462-9, 463, 463-4, 463-5, 470, 470-1, 470-3, 481, 481-2, 481-3, 481-6, 481-7, 481-8, 481-9, 482, 482-1, 482-2, 482-3, 482-4, 482-5,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9, 483-10, 483-11, 483-12, 483-13, 485-2, 485-3, 485-7, 485-8, 485-9, 485-10, 485-11, 486-21, 486-27, 508, 508-1, 508-2, 508-3, 539-4, 539-5, 539-6, 539-7, 539-11, 539-12, 539-13, 539-14, 539-15, 539-25, 539-26, 539-27, 539-28, 457, 457-2, 463-1, 470-2, 481-5, 483-7, 485-1, 486-20, 486-22, 509-5, 539-2, 539-16, 539-29</li> <li>- <b>원당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84개 필지)</b></li> <li>당하동 188-8, 188-9, 188-10, 188-11, 279-4, 281-5, 313-2, 314-2, 314-8, 314-9, 314-10, 314-11, 314-12, 315-4, 315-8, 319-4, 319-7, 394-1, 394-2, 394-3, 395-1, 397-2, 397-4, 401, 401-1, 401-2, 401-6, 401-7, 401-8, 405-1, 405-2, 407-6, 407-7, 408-2, 409-2, 409-5, 412, 412-1, 412-2, 413, 413-1, 413-2, 413-3, 413-4, 414, 415-6, 964-9, 981, 188-6, 188-12, 188-15, 279-3, 280-6, 281, 281-11, 313-1, 313-4, 313-5, 314-5, 314-7, 315-5, 315-7, 319-3, 319-6, 320-3, 320-4, 340-3, 340-5, 341-3, 341-4, 383-1, 383-2, 388-1, 388-3, 401-5, 410-7, 414-1, 414-2, 414-3, 415, 415-1, 416-1, 964-7, 964-24</li> <li>- <b>마전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169필지)</b></li> <li>마전동 518-7, 520-5, 521-1~5, 521-7,~9, 521-11, 521-13~14, 521-21~22, 521-26, 522-1~5, 523, 524, 524-1~3, 524-5, 524-7, 524-9, 524-11, 524-14~16, 524-18~20, 525-1~3, 526, 526-1~2, 526-4, 526-6~7, 527, 527-1, 529, 529-1~2, 529-4, 529-6~7, 529-9~10, 530, 530-1, 531, 531-1~2, 532, 532-1~6, 533, 533-1, 534, 534-1~8, 535-1, 535-3~6, 536-1, 536-3~5, 537, 537-1, 538-1, 539, 540, 540-1~7, 540-9~11, 541, 542, 543, 543-1, 544, 544-1~3, 545-1~4, 545-6~13, 545-15~17, 545-27~29, 546-1~2, 546-5~6, 710, 710-2~3, 711, 712, 산181-1, 산181-14, 산181-17, 산196-5, 산196-15, 산196-17, 산196-20, 산196-23, 산197-1, 산197-6~9, 산198, 산199-1, 산199-3, 산199-5~6, 산199-9, 산200, 산203-1, 산203-3~5, 산204-1~2, 산204-4, 499-3(일부), 515-32(일부), 710-4(일부), 산180-5(일부), 산185-9(일부), 산194-4(일부)</li> </ul>
--	-----	--

원당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당동 일원</li> <li>- 당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84개 필지)            당하동 188-8, 188-9, 188-10, 188-11, 279-4, 281-5, 313-2, 314-2, 314-8, 314-9, 314-10, 314-11, 314-12, 315-4, 315-8, 319-4, 319-7, 394-1, 394-2, 394-3, 395-1, 397-2, 397-4 401, 401-1, 401-2, 401-6, 401-7, 401-8, 405-1, 405-2, 407-6 407-7, 408-2, 409-2, 409-5, 412, 412-1, 412-2, 413, 413-1, 413-2, 413-3, 413-4, 414, 415-6, 964-9, 981, 188-6, 188-12 188-15, 279-3, 280-6, 281, 281-11, 313-1, 313-4, 313-5, 314-5, 314-7, 315-5, 315-7, 319-3, 319-6, 320-3, 320-4 340-3, 340-5, 341-3, 341-4, 383-1, 383-2, 388-1, 388-3 401-5, 410-7, 414-1, 414-2, 414-3, 415, 415-1, 416-1, 964-7 964-24</li> <li>-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83개 필지)</li> <li>- 원당동 457-1, 461, 461-1, 461-2, 462, 462-1, 462-2, 462-3, 462-4, 462-5, 462-6, 462-7, 462-8, 462-9, 463, 463-4, 463-5 470, 470-1, 470-3, 481, 481-2, 481-3, 481-6, 481-7, 481-8 481-9, 482, 482-1, 482-2, 482-3, 482-4, 482-5,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9, 483-10, 483-11, 483-12 483-13, 485-2, 485-3, 485-7, 485-8, 485-9, 485-10, 485-11 486-21, 486-27, 508, 508-1, 508-2, 508-3, 539-4, 539-5 539-6, 539-7, 539-11, 539-12, 539-13, 539-14, 539-15, 539-25 539-26, 539-27, 539-28, 457, 457-2, 463-1, 470-2, 481-5 483-7, 485-1, 486-20, 486-22, 509-5, 539-2, 539-16, 539-29</li> </ul>
불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로동 일원</li> <li>- 마전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불로동 725-8~9, 751-1</li> </ul>
대곡동	대곡동 일원
금곡동	금곡동 일원
오류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류동 일원</li> <li>- 왕길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오류동 767-2, 768-2, 768-4, 768-7, 768-10, 865-9</li> <li>- 왕길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왕길동 481-9~11, 482-1~2, 482-4~5, 482-8, 482-10, 483-1~4, 484, 484-1, 485-1~2, 485-5, 510-5~6, 510-12~13, 515-2~3, 519-1~2, 520-1~16, 521-1~2, 521-4~5, 521-10, 536-2~3, 536-9, 536-15, 536-19~20, 536-22, 537-1~2, 537-5, 538, 538-1, 539-1~7, 540, 541, 541-1~5, 541-7, 626, 626-73~74, 627, 628</li> </ul>

	왕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길동 일원</li> <li>- 마전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마전동 625, 660-2, 660-44, 661-2~3, 662-5, 663-1~4, 695-2~7, 696-2~6, 696-8~10, 698-7, 698-22, 698-31, 699-14, 735-5, 740-3, 산160-1, 산156-2~3, 산157-4, 산158-5,</li> <li>- 오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오류동 767-2, 768-2, 768-4, 768-7, 768-10, 865-9</li> <li>- 오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왕길동 481-9~11, 482-1~2, 482-4~5, 482-8, 482-10, 483-1~4, 484, 484-1, 485-1~2, 485-5, 510-5~6, 510-12~13, 515-2~3, 519-1~2, 520-1~16, 521-1~2, 521-4~5, 521-10, 536-2~3, 536-9, 536-15, 536-19~20, 536-22, 537-1~2, 537-5, 538, 538-1, 539-1~7, 540, 541, 541-1~5, 541-7, 626, 626-73~74, 627, 628</li> </ul>
--	-----	--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156호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6.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2. 개정이유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 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반장 위촉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
- 나. 반상회 개최자를 반장에서 통·반장으로 확대

####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6,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 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반장 위촉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7조제1항)
- 나. 반상회 개최자를 반장에서 통·반장으로 확대(안 제10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반장”을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통·반장 위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p> <p>② ~ ⑤ (생략)</p> <p>제10조(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통장은 관할 통의 각 반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7조(통·반장 위촉) ① ----- ----- <u>둘 수</u> <u>있다.</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회의) ① <u>통장 또는 반장-</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158호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6.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헌법에 따른 평등한 주민참여 권리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장의 위촉 요건 중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통장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통장 위촉 여건 중 연령 제한 일부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수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6,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이유

- 헌법에 따른 평등한 주민참여 권리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장의 위촉 요건 중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통장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통장 위촉 여건 중 연령 제한 일부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수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시행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 공 고 제 호

통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동 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동 장

1. 후보자 등록대상 : 통장

2. 후보자 등록 신청

가.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년 월 일 ~ 월 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방법 :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대리나 우편은 불가)

다. 자 격

- ①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18세 이상의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라. 제 출 서 류

-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동 주민센터 비치)
- ② 봉사활동 실적 및 참고자료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 그 밖에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구보 등)
- ③ 해당 통 지역주민(세대주)의 통장 후보자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동 주민센터 비치)

마. 위촉절차 및 방법

- 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동장이 위촉
-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바.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총 8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032)560-0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167호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58조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2. 6.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사업명 : (주)이도, 동아공사(주)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 2. 사업시행자 : (주)이도(대표:최정훈), 동아공사(주)(대표:김건훈)
- 3.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확정일 : 2022. 6. 27.)

토지소재	종전 지적공부(폐쇄)		신규 지적공부(확정)		비고
	지번수	면적(m <sup>2</sup> )	지번수	면적(m <sup>2</sup> )	
서구 백석동 212-2일원	총13	총84,039	총3	총84,180.6	증141.6m <sup>2</sup> 1~3 단계별사업
	5	60,722	1	60,797.5	1단계[(주)이도]
	6	23,072	1	23,135.0	2단계[동아공사(주)]
	2	245	1	248.1	3단계[공용도로]

- 4. 공고기간 : 2022. 6. 27. ~ 2022. 7. 11.
-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6.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22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종전 및 확정토지 지번별조서

###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1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	잡종지	32,657	(주)이도	1단계
2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8	유지	422	(주)이도	1단계
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9	유지	4,419	(주)이도	1단계
4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0	잡종지	14,933	(주)이도	1단계
5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1	잡종지	8,291	(주)이도	1단계
6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4	잡종지	8,990	동아공사(주)	2단계
7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37	잡종지	6,917	동아공사(주)	2단계
8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61	잡종지	637	동아공사(주)	2단계
9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62	유지	206	(주)이도, 동아공사(주)	3단계
10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63	잡종지	4,906	동아공사(주)	2단계
11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11	유지	69	동아공사(주)	2단계
12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12	잡종지	1,553	동아공사(주)	2단계
1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23	구거	39	(주)이도, 동아공사(주)	3단계

### 확정토지 지번별조서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1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55	잡종지	60,797.5	(주)이도	1단계
2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57	잡종지	23,135.0	동아공사(주)	2단계
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56	도로	248.1	(주)이도, 동아공사(주)	3단계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2022-57호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2. 6.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청라SK VIEW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93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50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2년 6월 27일

###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2년 9월 27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